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훈계요구

제 목 ○○○ 관광단지 조성사업(골프장) 변경추진 부적정 등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훈계대상자
-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②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 ③ 광주광역시 ○○○○○본부 ○○과 지방○○○○○ ○○○
(전 ○○○○○본부 ○○과 지방○○○○)
 - ④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처 ○○○○팀 ○○○급 ○○○

내 용

지방○○○○○ ○○○은 2012. 1. 20.부터 2012. 7. 15.까지, 지방○○○○○ ○○○은 2010. 3. 3.부터 2012. 7. 20.까지 광주광역시 ○○○○과에서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사업승인 업무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1. 9. 1.부터 2014. 2. 9.까지, 2015. 1. 23.부터 2017. 9월 현재까지 각각 광주광역시 ○○○○○본부 ○○과에서 ‘○○○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도 관련 협의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급수시설공사 설치 적정성 확인 및 ○○○○○○의 전용상수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업무 감독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

사 ○○○급(○○) ○○○은 2011. 12. 27.부터 ○○본부 ○○○○처 ○○○○팀 ‘○○○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시행업무 실무담당자였으며, 2015. 7. 1.부터 2017. 9월 현재까지 ‘○○○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업무 ○○○○팀 팀장직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동 ○○○ 일원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와 2004. 9. 13.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모집공고(2004. 6. 16.(1차) / 2004. 2. 22.(2차))를 통하여 선정된 ○○○○컨소시엄¹⁾과 도시공사는 ‘○○○, “○○ ○○○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후 (주)○○○○○○○ 법인으로 변경 설립하였다.

광주광역시는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1. 3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 일대 2,778천㎡(84만평)를 ○○산관광단지로 지정·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00호) 하였고, 이후 ○○○는 ○○○가 사격장으로 이용하였던 사업부지에 대한 불발탄 제거 작업(작전)을 2007. 4월~2011. 10월까지(4년 6개월)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사업자((주)○○○○○○○ / 이하 “○○○○○○○”라 한다.)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중 골프장(체육시설)에 대하여 2012. 6월 부분준공을 신청하였으나, 실시협약 제30조제1항의 공사기간 등 공정표상 유원지(테마파크, 휴양놀이시설 등)와 골프장은 동시에 준공토록 됨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준공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리조트는 2012. 6. 12. 위 관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1) ○○○○컨소시엄 : ○○○○(50%), ○○○○○○(45%), ○○○○(3%), ○○○○○○○○(2%)

‘사업시행자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등 소송(사건번호 2012가합0000호)’을 제기함에 따라 2012. 0. 0. ○○지방법원은 강제조정²⁾을 하였다.

또한 ○○○리조트는 2014. 5. 7.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사건번호 2014가합0000호)을 제기하여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소유권 등 인허가를 조건으로 토지와 대중골프장 순수익의 기부를 요구하여 민간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2014. 6. 18. 피고인 도시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은 재판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2012년 강제 조정의 기판력³⁾에 저촉되어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15. 2. 12. “유원지 조성사업은 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개발하되, 만일 유원지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2015. 2. 26. 광주광역시는 원고의 합의내용 및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원고와 합의하라는 것은 원고의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2016. 6. 30. ○○지방법원은 강제조정 결정⁴⁾함에 따라 피고인 도시공

2) (민간사업자) 유원지부지 및 경관녹지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기부. 대중제(9홀) 운영 순수익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설립후 계속 기부

(시·도시공사) 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체육시설 설립자 명의변경하고 부분준공 및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3) 기판력 : 소송사건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

4) 1. 원고는 ○○○ ○○ ○○○ ○○○○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중 원고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 녹지 및 유원지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기부한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중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이 사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제5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성사업중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기 지출한 투자비 금이백이십구억팔천육백사십삼만원

사는 2016. 0. 00.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은 사회적 합의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요구되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이에 대하여 2015. 0. 0.부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여 2016. 0월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소송 해결방안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2016. 00. 00.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규정에 의거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17. 0. 00.)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는 2012. 00. 00. 체육시설(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에 대하여 조건부 등록을 마치고 마을을 통과하는 협소한 진입로를 이용하면서 운영 중에 있다.

1. 법원의 조정 결정된 대중제(9홀) 발생 순수익금 사회복지 장학재단 기부 불이행

○○○○○○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2014가합0000호) 소송’과 관련하여, 2016. 0. 00. ○○지방법원(제00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결정사항 중 “3.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7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 목적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라고 합의 결정되었고,

천원(22,986,431,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 28홀) 중 대중제 9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 목적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계속 기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중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고, 광주 광산구 ○○동 산○○○-○○ 임야 61,488㎡를 포함한 체육시설 부지 일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2항의 투자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2. 11. 19.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는 사회복지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수입금, 이사회 구성,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 납부 시기는 ○○○ CC 결산완료 후 30일 이내로 하고, ○○○ CC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는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계속 기부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2. 11. 23. 광주광역시 ○○○○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 사회복지장학재단의 정관 제6조(재산의 구분)에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출연한 예금 2억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 일체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제8조(재원조달)에 법인의 재원은 ○○○○○○/○○○컨트리클럽 대중제골프장 9홀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기부 받아 운영하며 골프장의 순수익의 규모산정은 매년 광주광역시에서 추천한 회계감사가 실시하고, 다만 골프장의 수익금액 산정결과 연간 수익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 대표이사 책임하에 연간 2억원 이상 사업비를 조달하여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2. 11. 23. ○○○○○○ 대표이사(○○○)는 (재)○○○ 사회복지장학재단에 대중제골프장 9홀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기부하고 수익산정 결과 2억원 미만일 경우 ○○○○○○ 책임하에 연간 2억원 이상 사업비를 조달하여 법인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법인 설립 시 재원확보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는 골프장(대중제 9홀+회원제18홀)을 2012. 11. 26. 조건부5) 등록한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4개년)의 골프장 운영상 대중제골프장(9

홀)의 순이익금을 기부하거나 순수익 산정결과 2억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 매년 2억원을 기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는 “사업비 조달에 관한 입장이 적자여건”, “이사진의 바쁜 사업 일정상 이사회 기일을 정하지 못한 사정” 등을 사유로 이사회 개최의 지연과 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6. 0. 00. 광주광역시의 목적사업 허가조건(기부) 이행 촉구(4차)를 받고, 오히려 2017. 0. 00. (재)○○ 사회복지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내용 중 제2장제8조제3항⁶⁾을 삭제할 것을 의결하였다며 2017. 0. 00. 광주광역시에 재단의 정관내용을 변경신청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2017. 2. 7. 법인의 정관 중 제2장제8조(재원조달)제3항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중요 조항으로 법인허가 조건⁷⁾이고 재단설립 협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서에 따른 조항으로 신청한 정관내용 삭제(변경)에 대하여 「민법」 제45조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를 통보 하였다.

그러나 ○○○○○○는 2017.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16. 0. 00.) 사항이고, 재단설립 협약(2012. 00. 00. / 광주광역시광산구·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사회복지장학재단 설립허가(2012. 00. 00.)의 중요 결정 내용인 기부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2017. 4. 28. ○○회계법인(대표이사 ○○○ / 광주광역시 ○구 ○○○로

5) ○○○ 2013. 00. 0.완료

6) 다만 골프장의 수익금액 산정결과 연간 수익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주)○○○ 리조트 대표이사 책임하에 연간 2억원 이상 사업비를 조달하여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7) ○○산 CC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 관련 사회복지 장학재단 설립 협약서(2012. 00. 00.)

239 12층)의 (주)○○○○○○의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에 대한 “회계검토보고서” 제3페이지의 손익계산서 총괄표 내용 중 대중제골프장의 영업외 비용이 19,652,260,544원이 되어 있고, 같은 보고서 제 6페이지의 영업외 비용은 대중제골프장의 경우 이자비용 11,786,620,743원 기부금⁸⁾ 6,519,513,880원, 기타 1,346,125,921원으로 정리되어 있고,

아울러 ○○○○○○ ○○○CC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2017. 3. 20. ○○회계법인(대표이사 ○○○/서울○○○구 ○○○○로 ○○○)의 ○○○○○○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 8기(2015. 1. 1.~2015. 12. 31.)와 제9기(2016. 1. 1.~2016. 12. 31.)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된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제8기에는 -21,177,884,029원이었고, 제9기에는 10,187,527,453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내부 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2017. 1. 23. 각각 날인하여 공시되어 있다.

따라서 ○○○○○○는 2016. 6. 30.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당기순이익금 중 대중제골프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2013년도부터 2016년분에 해당하는 수익금 등 총합계 3,995,842,484원을 (재)○○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하여야 한다.

[표1] ○○산 CC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손실)

<단위 : 원>

8) 기부금 : ○○재단 기부금으로 표기 됨.

당기별	순이익금		기부 해당액	비 고
	전체분(27홀)	대중제 9홀(9홀/27홀)		
2013년도분	-5,496,894,707		200,000,000	
2014년도분	-3,588,836,014		200,000,000	
2015년도분	-21,177,884,029		200,000,000	
2016년도분	10,187,527,453	3,395,842,484	3,395,842,484	
(소 계)			3,995,842,4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익 전체분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함 ▪ 2013, 2014, 2015년도 기부해당액은 (재)○○사회복지장학재단의 정관 8조(재원조달) 제3항에 의거 연간 수익금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기부하여야 할 금액임 ▪ 2016년도 대중제 순이익금은 홀 수를 기준으로 균등분배 계상하였음 				

2. ○○○ CC 회원제(18홀) 및 대중제(9홀) 미 분리로 수익금 처리 불투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및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골프장(대중제골프장)을 병설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과에서 2012. 11. 26. 체육시설업 조건부로 등록 통보한 ○○○골프장을 ○○○○○○가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을 병행 운영하면서 1동의 클럽하우스 시설 내에 회원제(18홀)와 대중제골프장(9홀)을 분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용객이 혼재되어 1곳의 안내 데스크에서 시설 이용 신청과 이용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

으로, 27홀 운영 중 대중제(9홀)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9홀을 3개의 코스로 혼재(A→B, B→C, C→A)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제 코스만을 이용(저가요금)하여야 하는 이용자가 회원제 코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사용자들에 대한 이용료 수입금 중 개별소비세를 구분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세부적인 사실 확인과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2016. 6. 30. ○○지방법원에서 ○○○○○○와 도시공사 간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하여 조정결정 된 제3항의 이행을 위해 ○○○CC의 27홀 중 대중제골프장(9홀)에서 발생한 순이익금 산정은 27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 결정되었어야 한다.

3. ○○산 관광단지 수도시설 관리 부적정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 등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를 검사할 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골프장

포함)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도사업자는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및 청소 후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매년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의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에 따르면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8조(시설기준),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6조(수질기준),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검사),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새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

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공법인,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민간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급수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과에서는 광산구 ○○동 ○○산 일원에 폐쇄된 군 포사격장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 조성을 목적으로 아래 [표1]가 같이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9)’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5. 1. 31.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관광단지개발사업자 및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9) ○○산 관광단지 : 총 면적 2,732,768㎡, 유원지 423,787㎡(숙박시설, 오락시설, 휴양, 문화, 접객, 공공편익시설), 체육시설 1,543,496㎡(골프장 27홀, 골프텔 8동), 녹지·광장 765,485㎡(경관녹지, 광장 60호)

[표1] ○○○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체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	사업승인기관	관당단지개발 사업자 및 시행자	민간사업자 (운영자)	급수신청 확인
광주광역시 ○○○○과	광주광역시 ○○○○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주)○○○○○○○ (대표 ○○○, ○○○)	광주광역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과

그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005. 8. 10. (주)○○○○○○(대표 ○○○, ○○○)를 ‘○○○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운영자)로 선정하여 자금조달, 설계, 시공 등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0. 00. ○○○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 관광단지 내에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여 1일 229 m³의 생활용수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협의되었고, 2007. 0. 0. 광주광역시 ○○○과로부터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표2]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생활용수 공급계획

구 분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비 고
용수구분	생활용수	생활용수	
공급방법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m ³ /일)	229	229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광주광역시 ○○○과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않고 계곡수를 정수하여 생활용수(이하, 전용상수도¹⁰)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2. 13. 광주광역시 ○○○과에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및

10) 「수도법」 제3조제12호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수도 외의 수도시설로서 100명이상 5천명 이내의(유동인구 포함) 급수인구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조성계획 변경' 사전검토를 문서로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광주광역시 ○○○○과는 2012. 2. 29.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관광진흥법」 제58조11)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인허가 등의 의제(전용상수도 의제 포함)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의제 관련서류 없이 2012. 2. 23.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부 ○○과에서는 승인신청서 협의요청에 대하여 2012. 3. 13. '저수조의 설치 기준' 준수에 대한 의견은 제시한 반면, '전용상수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없이 ○○○○과로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과는 아래 [표3]과 같이 2012. 5. 15. 지방상수도에서 전용상수도로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변경·승인하였다.

[표3]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생활용수 공급계획 변경승인

구 분	당 초	변경승인	비 고
용수구분	생활용수	생활용수	
공급방법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계곡수를 정수후 사용)
시설용량(㎡/일)	229	229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산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을, 2012. 5. 24. 건축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허가를 득한 후 2012. 10. 17.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11)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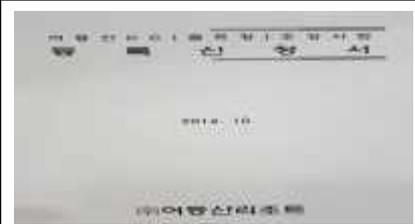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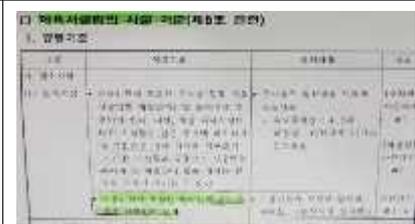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위 시설 및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운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2012. 10. 16. 건설 당시 신고한 건축주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을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운영자)로 선정된 (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는 ‘○○○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사업’에 포함된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2012. 00. 00. 준공한 후 광산구 ○○과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00. 09. 위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주)○○○○○○○는 ○○○○○○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2012. 10. 29. 광주광역시 ○○○○과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 ○○○○과는 위 등록신청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2012. 00. 0. ○○○○○본부 ○○○과에 급수시설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본부 ○○○과는 2012. 11. 9. “별도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과는 2012. 11. 26. ○○○○○○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주)○○○○○○○에 통보하였다.

[그림1] ○○○○○○ 골프장 등록신청시 급수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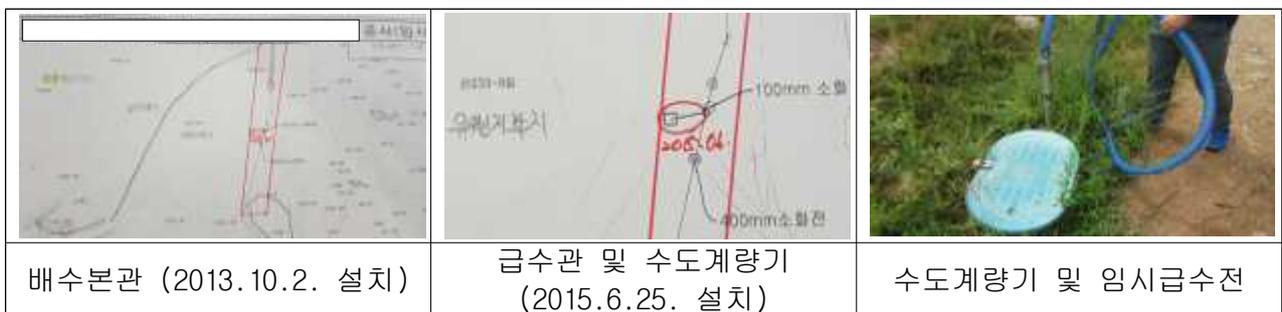
		
<p>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p>	<p>등록신청서내 급수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내용</p>	<p>급수시설 사진대지 (전용상수도)</p>

그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산 관광단지 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13. 5. 9. 광주광역시 ○○○○○본부에 상수도공급을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 ○○○○○본부 광산사업소는 (주)○○○○○○에 급수공사비 ○○○○○본부는 2013. 5. 14.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소요사업비 282,700,000원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부과하고, 2013. 10. 2. ○○산 관광단지 유원지(현재, 미개발지역) 유입지점까지 배수분관을 설치하였다.

(주)○○○○○○는 광주광역시 ○○○○○본부 ○○사업소에 2015. 6. 10. 급수시설공사 시행을 1,967,000원을 부과하고 2015. 6. 25.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 (수용가 성명 : (주)○○○○○○)를 설치하였다.

[그림2] 배수분관 및 급수설비 설치현황



광주광역시 ○○○○○본부 ○○사업소는 2015. 8. 20. 수돗물 통수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주)○○○○○○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표4] (주)○○○○○○ 상수도 사용량(수도요금 부과량) 현황

<단위 : m³/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도	-	-	-	-	-	-	-	122	261	216	153	153
2016년도	36	28	6	6	26	37	40	30	60	51	19	20
2017년도	5	0	5	3	5	32	40	60	30	-	-	-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광주광역시 ○○○○○본부 ○○과는 2015. 11. 15. ‘광주광역시 ○○정비기

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 관광단지내에 1일 507m³/일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5]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체계



[표6] ○○○ 관광단지 조성사업 생활용수 수요량

<수도정비기본계획, 2015.11.1., 단위 : m³/일>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접객시설
507m ³ /일	215m ³ /일	53m ³ /일	197m ³ /일	16m ³ /일	26m ³ /일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012. 5. 15.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골프장 생활용수 공급계획을 지방상수도에서 전용상수도로 변경하였음에도, 광주광역시 ○○○○○본부에서는 2013. 10. 2. ○○○ 관광단지 내 배수본관을 설치하고, 2015. 6. 25. (주)○○○○○○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 등을 설치한 사유가 부적정하여 정부합동감사 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생활용수 공급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골프장 부지 내에 위치한 계곡 2개소를 차단하여 취수구 등을 설치하고, 1일 400m³을 정수할 수 있는 전용상수도¹²⁾를 클럽하우스 지하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2) 전용상수도 처리과정 : 계곡수 취수→전처리 여과→급속모래여과→오존→활성탄→염소소독→저수조→정수공급

또한 (주)○○○○○○는 체육시설업 등록일 이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전용 상수도를 이용하여 목욕용수·식당조리용수·화장실 세면용수 등으로 2012. 11. 26. 부터 2017. 9. 7.까지 계곡수 168,464m³을 이용(1일 약96m³)한 사실과 전용상수도를 통한 생활용수 공급부족 시에는 유원지 유입부에 설치된 임시급수전을 이용하여 지방상수도를 사용(물탱크 차량으로 상수도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3] 전용상수도 불법시설 설치 증거

			
계곡수 취수구 1	계곡수 취수구 2	취수구 하류	계곡수 집수정
			
전처리 및 급속여과	오존+활성탄	염소소독	유출유량계
			
급수관	욕탕용수	세면용수	조리용수

그리하여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주)○○○○○○에서 지방상수도 관로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17. 9. 25.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전용상수도(정수시설)을 폐쇄하였다.

가. 광주광역시 ○○○○과 관련

1)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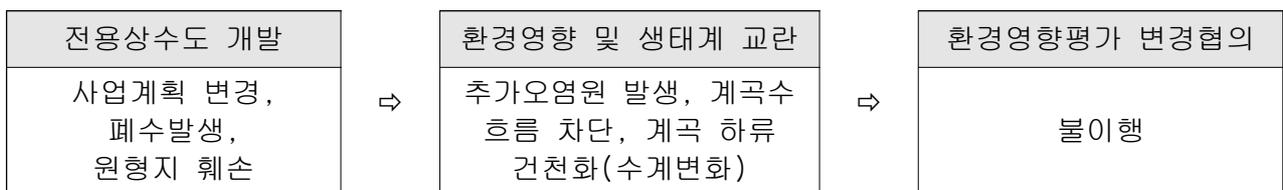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과에서는 2012. 5. 15.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

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를 전용상수도로 변경하는 경우 정수장에서 직접 공급받는 지방상수도와 다르게 전용상수도의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폐수가 배출¹³⁾되고, 취수구 설치를 위하여 계곡수 흐름을 차단하면 원형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생태계 교란을 촉발하므로 반드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환경 악영향을 분석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환경보전방안에 용수공급계획 변경내용 및 저감방안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위 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 없이 2012. 5. 15. ‘○○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표7] 전용상수도 개발행위에 따른 위법 행위



2) 체육시설(골프장) 조성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2012. 2. 14.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사전검토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으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관광진흥법」 제58조에 따

13)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재이용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재이용 가능한 수질기준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수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라 다른 법령의 인허가 사항의 의제(전용상수도 의제 포함)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012. 2. 23. ‘○○○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및 체육시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전용상수도 의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 5. 10. ‘○○○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사항 통보’ 시 「수도법」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를 반드시 득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2. 3. 13. ‘○○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상수도)’에서 ○○○○○본부 ○○○과가 전용상수도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회신하였을 때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평면도에 표시된 정수시설의 설치조건을 재차 확인하여야 함에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부서로서 관련서류 검토 부실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을 부적정하게 승인하였다.

결국 지방○○○○○ ○○○과 지방○○○○○ ○○○은 당초 지방상수도를 전용상수도로 변경하는 용수공급계획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이행 및 체육시설(골프장) 조성계획 변경승인 부적정에 대한 담당책임 및 실무책임이 있다.

나. 광주광역시 ○○○○○본부 ○○○과(전용상수도 관리 부적정) 관련

광주광역시 ○○○○○본부 ○○○과에서는 2012. 2. 29. ○○○○과의 ‘○

○산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 시 급수시설계획(상수도 공급방안 등) 검토과정에서 당초 지방상수도에서 전용상수도로 사업계획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시공자 및 운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8조(시설기준), 제19조(완공시 수질검사),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6조(수질기준),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검사),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등을 안내하여야 했음에도, 2012. 0. 00.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상수도)’ 시 관련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전용상수와 관련하여 의견 없이 회신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상수도에서 전용상수도로 용수공급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2013. 0. 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지방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라 시설공사 소요사업비 282,700,000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2013. 0. 0. 배수본관을 유원지 유입(현재 미개발 지역)지점에 설치하였으며, 2015. 0. 00. (주)○○○○○○의 급수시설공사 시행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비 1,967,000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2015. 6. 25.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수용가성명 : (주)○○○○○○)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 조성사업 변경계획 승인과정에서 2012. 3. 13. ○○○과로 “○○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상수도)” 시 ‘저수조의 설치 기준’ 준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수본관 설치시기 또는 급수시설공사 시기에 ○○○○○○ 골프장의 급수시설 현황을 「수도법」 제33조의 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지도·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2. 11. 6. ○○○○과에서 ‘○○○ CC 조성사업’ 체육시설 등록신청 협의요청 시 클럽하우스 내 급수시설 사진대지를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였으므로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였어야 함에도, 상수도 인입(사용)계획이 없어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더불어 (주)○○○○○○의 급수시설공사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완료하고 수돗물을 공급하였을 때에는(2015. 8. 20.부터 요금부과)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급수설비에 대한 검사와 저수조설치기준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요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정산서를 확인¹⁴⁾하면 (주)○○○○○○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에서 전용상수도를 불법 이용하도록 방치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의 소극행정에 따라 (주)○○○○○○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를 방문객(계획급수인구 822명/일)에게 공급하였다.

[표8] 사전감사 시(2017.9.7.) ○○○○○○ 전용상수도 정수 수질분석 결과

구 분	총 대장균군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색도	망간
기 준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4.0~0.1mg/L	5도 이하	0.05mg/L이하
본관 화장실	검출	검출	검출	0	10	0.097
본관 식당	검출	검출	검출	0	10	0.093
적합여부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 수질분석기관 : 광주광역시 ○○○○○○본부 수질연구소(먹는물수질검사기관)

14) 상수도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2016년 이후 불법 도수 또는 타 급수시설에 의한 생활용수 공급여부 확인 필요

또한 위 관서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주)○○○○○○의 전용상수도 설치사실을 몰랐으며,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클럽하우스에 설치된 수도시설은 전용상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용상수도가 아니거나 전용상수도 불법 설치사실을 몰랐다면, 오히려 위 관서는 「수도법」 제33조¹⁵⁾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지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 전용상수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결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급수설비등의 검사) 및 같은 조례 제25조(요금의 징수)에 따른 (주)○○○○○○의 상수도요금 127,411,513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지방○○○○○ ○○○은 2012. 3. 13. ○○○과에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상수도)’ 시 관련법령 검토 소홀로 전용상수도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고, 2012. 11. 6. ○○○과에 ‘○○○CC 조성사업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조건부)에 따른 협의 회신’ 시 전용상수도 인가사항을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실무책임이 있으며, 2015. 6. 10. (주)○○○○○○의 급수시설공사 시행신청 이후 ○○○○본부 ○○○과에서 「수도법」 및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주)○○○○○○에서 전용상수도 불법 이용을 방치(전용상수도의 지도·점검 의무 위반)한 감독책임이 있다.

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CC 전용상수도 설치 부적정) 관련

1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리조트 클럽하우스 연면적: 6,790㎡)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도사업자는 지도·감독하여야 함,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
○○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2. 5. 15. ○○○ 관광단지 건설단계에서 갑자기 지방상수도를
전용상수도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과에서 요청한 인허가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지방상수도를 전용상수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2012. 5.
15. ○○○○과의 ‘○○○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
성계획(변경)’ 및 2015. 11. 15. ○○○○○본부 시설과의 ‘광주광역시 수도정비기
본계획’에 관련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하였어야 하나, 광주광역시 ○○○○과
및 ○○○○○본부 시설과에 전용상수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 2건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공사는 정부합동감사 시 (주)○○○○○○의 전용상수도 설치사실
을 몰랐고, ○○○○○○ 클럽하우스에 설치된 수도시설은 전용상수도가 아니라
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공사가 (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체육
시설 내 급수시설의 계획 및 시행주체는 민간사업자에 있으므로 전용상수도의
설치 책임 또한 (주)○○○○○○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용상수도 불법 설치사실을 몰랐
고 전용상수도의 설치 책임이 (주)○○○○○○에 있다고 한다면, 위 공사는 광주
광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위 시설의
설치를 방조한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위 공사는 지방상수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법률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미인가 전용상수도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전용상수도의 설치를 방조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주)○○○○○○가 2012. 11. 26.부터 총 1,759일 동안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수를 방문객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일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 까지 168,464m³을 공급할 수 있었고, 127,411,513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다.

[표9] 전용상수도 불법설치로 인한 요금(추정)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수량(m ³) ①	168,464m ³	168,464m ³ (임시 사용후 누적 유량)					
단가(원/m ³) ¹⁶⁾ ②	756.313 (평균단가)		708.169	724.612	741.863	790.653	816.270
요금(원) (①×②)	127,411,513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 공사는 이러한 불법시설의 설치사실을 방조하여 공공자산인 ‘계곡수’를 개인이 불법으로 점용 이용하도록 하여 특정인(주)○○○○○○에게 127,411,581원의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주)○○○○○○는 위 [표8]과 같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를 방문객(계획급수인구 822명/일)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전용상수도 설치자인 (주)○○○○○○가 「수도법」 제14조(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8조(시설기준), 제19조(완공시 수질검사),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6조(수질기준),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검사),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등의 절차를 모두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용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16) 단가는 2013년~2017년 평균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합산액 (○○○○○본부 요금과 제공) : 수도요금 590.922원/m³에 물이용부담금 165.391원/m³ 더한 통합단가 756.313원/m³ 사용

결국 위 공사 ○○○급(○○) ○○○은 2012. 5. 15. ‘○○○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변경승인 이후 별도로 전용상수도 인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도법」에 따른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도 전용상수도 불법 이용을 방조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를 방문객(계획급수인구 822명/일)에게 공급한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기관경고] ○○○ CC 시설의 운영 및 회계 처리 등에 있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혼재 운영 등으로 인해 기부금 납부 회피 및 부당하게 수익금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도 등 급수시설의 허가 및 관리를 태만히 하여 불법시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 중 지방○○○○○ ○○○, 지방○○○○○ ○○○, 지방○○○○○ ○○○을 훈계처분 하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급 ○○○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법원 조정결정 후 세부 협의 등에 대한 시민단체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하여 대중제(9홀) 발생 순수익금 사회복지 장학재단 기부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소관 부서별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련 협약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고, 미납 기부금에 대하여는 촉구 등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② 골프장 수익금의 회계처리가 미흡하며, 회원제 이용객수 구분산정 불합리로 개별소비세 정상 납부가 불투명한 등 법인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 여·부 등 사업

추진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골프장 내 인가받지 않은 전용상수도(정수시설)를 설치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를 공급한 (주)○○○○○○에 대하여 「수도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④ 골프장 부지 내 계곡 2개소에 불법 설치된 취수구를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CC 회원제(18홀) 및 대중제(9홀) 미 분리 운영과 관련하여 코스 분리운영 등 투명한 방법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